

【 10 】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4.
제출자 양주군수

1. 제정이유

시간·거리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부회장에 위탁토록 함(안 제2조)
- 나.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등으로 하고 도서대여는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이동도서관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 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의거 선발하여 임용하도록 하되, 1대 차량에 사서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며, 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부(이하 “문고 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주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립도서관 담당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3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양주군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 ②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문고지부 회장은 양주군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임용등)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 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의거 선발하여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다만, 사서직원은 업무형편에 따라 열람직을 임용할 수 있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사무처리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새마을이동도서관제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위탁의 철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동 도서관 운영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2. 수탁자가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수의 행정지도·감독 사항 이행등을 태만히 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

□ 제정이유

시간·거리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부회장에 위탁도록 함
(안 제2조)

나.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등으로 하고 도서대여는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이동도서관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 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의거 선발하여 임용하도록 하되, 1대 차량에 사서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며, 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문고의 설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단체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관련사업계획서

○ 그간 주요 추진상황

- 2001. 10. 29 : 경기도에서 지원계획 통보
- 2001. 11. 7 : 경기도에 사업계획제출(새마을문고 의견수렴)
- 2001. 12. 23 : 이동도서관 운영비 당초예산 확보 105,000천원
- 2002. 2. 3 :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비 지원계획통보 및 차량구입비 60,000천원 도비 자금교부
- 2002. 2. 18 : 이동도서관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02. 3. 13 :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교부 (도비 20,000천원)

○ 향후계획

- 2002. 4 ~ 5월 중순 : 관련조례 의회의결 및 공포
- 2002. 5월 : 이동차량구입, 인력충원, 도서구입 등 이동도서관 운영준비
- 2002. 6월 : 이동도서관 운영

□ 예산수반사항

항 목 별	금액(천원)	주 요 항 목 별 금액	비 고
총 계	104,462		
1. 차량취득비 등	4,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등록세 3,000 · 공차 : 600 · 차량내 커튼 및 광고표시등 1,000 	
2. 차량운영비(연)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세 60 · 환경개선부담금 100 · 보험료 400 · 유류비 3,600 · 세차비 240 · 차량유지비 600 	
3. 도서구입비	2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도서구입비 24,000 	
4. 인건비	5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인건비(3명) 51,000 	
5. 일반운영비	6,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6,000 · 난방비 600 	
6. 공공요금	1,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료 600 · 전화료 1,200 · 우편요금 102 	
7. 자산취득비	3,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가 3,000 · 책상및의자 400 · 캐비넷 160 	
8. 전산화 장비	7,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구입 4,000 · 프린터기 500 · 도서관리 프로그램 2,500 · 기타 소프트웨어 600 · 컴퓨터 주변기기 등 200 	

□ 사전예고결과

○ 사전예고 방법

- 양주군 홈페이지 : 2002. 2. 18 ~ 3. 9(20일간)
- 양주군 군보 계제 : 2002. 2. 25
- 양주군새마을지회 및 문고에 입법예고 사항 통보

○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경기도(문고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사전 의견 수렴 : 2002. 2. 25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